

2024년 하반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일반직, 공무원)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구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채용직렬 및 인원

○ 일반직 : 102명 (사무 16명, 기술 86명)

단위 : 명

| 구분 | 채용 직급 | 계 | 사무 | | 기술 | | | | | | | | |
|----------|--------------|-----|----|----|----|----|----|----|----|------------|------------|-------------|----|
| | | | 소계 | 일반 | 소계 | 환경 | 토목 | 건축 | 전기 | 기계 (일반) | 기계 (공조) | 기계 (에너지) | 임업 |
| 계 | - | 102 | 16 | 16 | 86 | 1 | 3 | 1 | 40 | 8 | 14 | 18 | 1 |
| 일반경쟁 | 7급 | 63 | 16 | 16 | 47 | - | 3 | - | 21 | 8 | 14 | - | 1 |
| 제한 경쟁 | 경력직 | 7급 | 38 | - | 38 | - | - | 1 | 19 | - | - | 18 | - |
| | 폐기물처리 기술사 | 4급 | 1 | - | 1 | 1 | - | - | - | - | - | - | - |

○ 공무원 : 52명

단위 : 명

| 구분 | 계 | 환경시설 관리원 | 청정대기 관리원 | 안내원 | 도로 관리원 | 주차 관리원 | 안전 관리원 | 승강장 관리원 | 이동지원 상담원 | 이동지원 운전원 | 승마교관 | 수목 관리원 |
|------|----|-------------|-------------|-----|-----------|-----------|-----------|------------|-------------|-------------|------|-----------|
| 일반경쟁 | 52 | 5 | 7 | 1 | 3 | 5 | 2 | 1 | 1 | 25 | 1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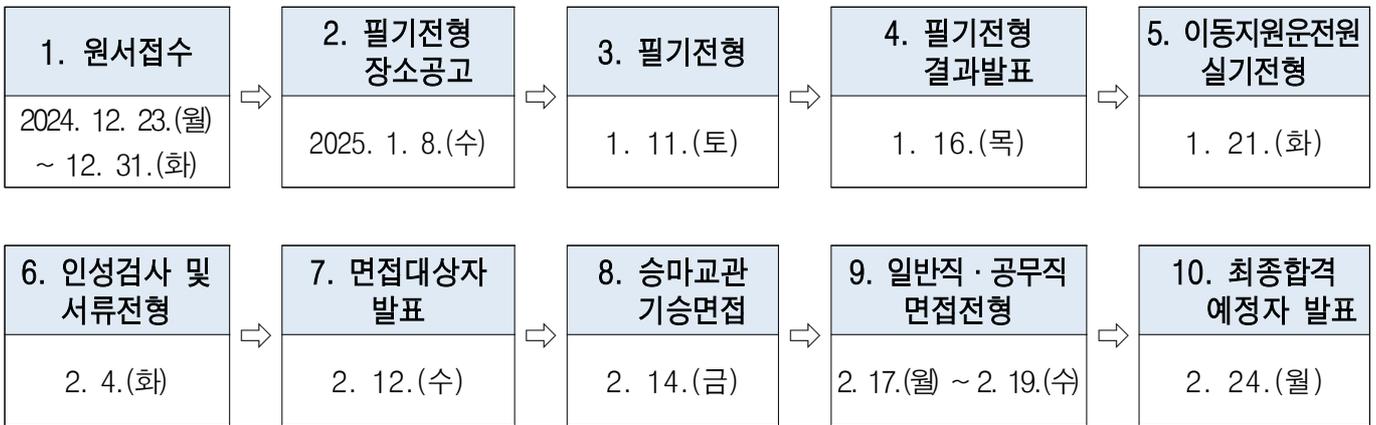
2 전형절차 및 일정표

□ 전형절차

| 대 상 직 렬 | | 전 형 절 차 | | | | | |
|---------|-----------|---------|--------|--------|--------|--------|--------|
| 일반직 | 일반경쟁, 경력직 | 원서접수 | → 필기전형 | → 인성검사 | → 서류전형 | → 면접전형 | |
| | 폐기물처리기술사 | 원서접수 | → | → 인성검사 | → 서류전형 | → 면접전형 | |
| 공무직 | 이동지원운전원 | 원서접수 | → 필기전형 | → 실기전형 | → 인성검사 | → 서류전형 | → 면접전형 |
| | 그 외 직렬 | 원서접수 | → 필기전형 | → 인성검사 | → 서류전형 | → 면접전형 | |

※ 일반직 폐기물처리기술사의 경우 필기전형을 실시하지 않으며, 공무직 승마교관의 경우 면접전형 시 기승 능력 평가 병행

□ 일정표



※ 상기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 응시자격

○ 공통사항

| 구 분 | 내 용 |
|------------------|--|
| 연 령 |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1966. 1. 1. ~ 2006. 12. 31. 출생자) |
| 성별/학력/병역 /거주지 | • 제한없음 |
| 기 타 | • 공단 채용 결격사유(붙임1)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직종과 관계없이 주말, 공휴일, 주·야간 근무가 가능한 자 |

○ 일반경쟁 분야 지원자격

| 구 분 | | 내 용 |
|-------------|---------------------------|---|
| 일반직 (사무) | 7급 (일반) | 공통응시 자격 외 별도 자격제한 없음 |
| 일반직 (기술) | 7급 (토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 의 자격증 소지자 (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재료시험, 지적, 지질 및 지반, 응용지질, 토목시공,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에 한함) |
| | 7급 (전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 의 자격증 소지자 (전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에 한함) |
| | 7급 (기계일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 의 자격증 소지자 (기계(안전), 기계가공,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승강기, 용접, 가스,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에 한함) |
| | 7급 (기계공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 의 자격증 소지자 (공조냉동기계에 한함) |
| | 7급 (임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 의 자격증 소지자 (조경, 산림, 임업종묘에 한함) |
| 공무직 | 환경시설 관리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 |
| | 청정대기 관리원 |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 | 안내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드프로세서(종전의 1급 포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 안전 관리원 (신천 수변공원) |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구 분 | | 내 용 |
|-----|---|--|
| 공무직 | 승강장 관리원 | 다음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최종 합격예정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무사고 운전경력자 • 최종 합격예정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면허정지 이상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 | 이동지원 상담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공공기관·비영리 민간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교통약자 관련 경력이 있는 자 •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콜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이동지원 운전원 | 다음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 • 최종 합격예정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 최종 합격예정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면허정지 이상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최종 합격예정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발급 포함) |
| | 힐링승마 교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종목에 한하며, 종전의 생활체육지도자 포함)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재활승마 관련 경력이 있거나 재활 관련학괴를 졸업한 자 |
| | 수목 관리원 / 도로 관리원 / 주차 관리원 | 공통응시 자격 외 별도 자격제한 없음 |
| | | |

※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을 소지하여야 함

※ 운전직렬의 무사고 및 면허정지 등 경력 판단은 운전경력증명서에 따름

○ 제한경쟁 분야 지원자격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경력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96 472 536 533">구 분</th> <th data-bbox="536 472 1453 533">당해 분야 자격 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96 533 536 640">7급(건축)</td> <td data-bbox="536 533 1453 640">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에 한함</td> </tr> <tr> <td data-bbox="296 640 536 748">7급(전기)</td> <td data-bbox="536 640 1453 748">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에 한함</td> </tr> <tr> <td data-bbox="296 748 536 846">7급(기계에너지)</td> <td data-bbox="536 748 1453 846">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에너지관리에 한함</td> </tr> </tbody> </table> | 구 분 | 당해 분야 자격 사항 | 7급(건축)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에 한함 | 7급(전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에 한함 | 7급(기계에너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에너지관리에 한함 |
| | 구 분 | 당해 분야 자격 사항 | | | | | | | |
| | 7급(건축)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에 한함 | | | | | | | |
| | 7급(전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에 한함 | | | | | | | |
| 7급(기계에너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에너지관리에 한함 | | | | | | | | |
| ※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해 업무내용 확인 불가 시 경력 인정 불가 | | | | | | | | | |
| 폐기물 처리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해 업무내용 확인 불가 시 경력 인정 불가 | | | | | | | | |

※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을 소지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을 통해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증빙서류 검증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요건에 미달 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불합격 처리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12. 23.(월) ~ 12. 31.(화) 15: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dpfc.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채용 홈페이지로만 접수하며,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은 받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필기·면접전형 신분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됩니다.
 - 접수 마감 기한(2024. 12. 31. 15:00)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 불성실 작성(자기소개서 미작성, 누락, 의미 없는 단어의 반복 기재, 질문과 상관 없는 문항별 답안 반복 기재 등)의 경우 전형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의 출생월일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출생월일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며, 응시원서와 주민등록상 출생월일이 상이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응시자는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접수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합격자 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시 제출합니다. 따라서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형절차별 주요내용

1 필기전형

- 대 상 : 채용공고 기준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 전원
- 시험일자 및 장소 : 2025. 1. 11.(토) 예정 / 장소 추후 별도 공고
 - ※ 시험장소 대관 등에 따라 시험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
- 필기시험 과목

| | 직 렬 | | 필기시험 과목 및 반영비율 | |
|---|-------------------------|---------------------|--|-----------------|
| | | | 직업기초능력평가 (50%, 40문항) | 선택과목(50%, 40문항) |
| 일반직 | 사무 | 일반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문제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 기술, 직업윤리 등) | 경영학, 행정학 중 택1 |
| | | 토목 | | 응용역학개론 및 토목설계 |
| | 기술 | 건축 | | 건축계획 및 건축구조 |
| | | 기계 (일반, 공조, 에너지) | | 기계일반 |
| | | 전기 | | 전기이론 |
| | | 임업 | | 임업일반 및 조경 |
| 특무직 | 직 렬 | | 필기시험 과목(40문항) | |
| | 환경시설관리원, 청정대기관리원, 수목관리원 | |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문제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 기술, 직업윤리 등) | |
| | 안내원 | | • CS개론 | |
| | 도로관리원 승강장관리원 | | • 도로교통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외 | |
| | 안전관리원 | | • 구급 및 응급처치론(응급환자 관리,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 |
| | 주차관리원 | | • 주차장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시행규칙 포함 | |
| | 이동지원상담원 이동지원운전원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포함 | |
| | 승마교관 | | • 스포츠 교육학 • 스포츠 심리학 | |
| ※ 법령 및 기타 법규 관련 과목 공고일 기준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 등은 제외) | | | | |

※ 제한경쟁 폐기물처리기술사의 경우 필기전형을 실시하지 않으며, 제한경쟁 경력직의 경우 일반경쟁과 동일하게 필기시험 실시

- **문항 수** : 일반직 80문항, 공무직 40문항
 - (일반직) NCS직업기초능력평가(40문항)와 선택과목(40문항) 병행
 - (공무직) 직렬별 1과목 출제(40문항), 복수 출제분야일 경우 분야별 혼용출제
- **배 점** : 1문항 당 2.5점, 100점 만점(일반직의 경우,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선택과목 각 100점 만점)
 - 사무직 일반 분야 선택과목의 경우 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과목별로 조정 점수를 적용

< 조정점수 산식 >

$$\text{조정점수} = \left\{ \frac{(\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right\} \times 10 + 50$$

1.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계}}{\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응시인원수} - 1}}$$

2.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경우 원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시험시간 및 형태** : 일반직 100분(쉬는 시간 없음), 공무직 50분 / 객관식(5지 선다형)
- **준비물** : 수험표 및 신분증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한함
 - ※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필수
 - ※ 촬영된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사용 불가
- **합격인원** :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총점이 60%이상 득점한 자 중 가산점수를 포함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 선발
(시험과목이 하나인 경우 총점이 40%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 ※ 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전 과목 총점의 60%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 불합격 처리
 - ※ 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한 자 중 최종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수만큼 합격자 결정
 - ※ 가산점 적용 대상 및 기준 : 공고문 후단 참조
- **동점자 처리** : 합격 최저점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합격자 발표** : 2025. 1. 16.(목)

② 실기전형(공무직 이동지원운전원)

- 대 상 : 이동지원운전원 응시자 중 필기전형 합격자
- 준 비 물 : 신분증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한함
 - ※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필수
 - ※ 촬영된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사용 불가
- 시험일자 및 장소 : 2025. 1. 21.(화) ~ 1. 22.(수) 예정 / 장소 추후 별도 공고
-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 시험차량 | 시험방법 | 최종기록 산출 | 평가기준 |
|--------------|--------------------------|---|-------------------------------------|
| 나드리콜 특장차량 | 공단이 정한 규격의 코스 운행(불임2) | 운행기록(코스통과 시간)과 코스 이탈 패 널티(이탈 1회당 +1초)를 합산하여 산출 | 최종기록이 2분30초 이내, 코스 이탈이 3회 미만인 경우 |

[합격자 결정]

- 1) 평가기준 내 최종기록이 빠른 순서대로 합격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처리
- 2) 다만, 합격자가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최종기록이 3분을 초과한 자 또는 코스 이탈이 3회 이상인 자 는 불합격 처리
 - 최종기록이 3분 이내인 자 중 최종기록이 빠른 순서대로 합격인원에 달할 때까지 추가 합격처리
 - ※ 합격 최저기록이 다수인 경우 합격 최저기록자 전원 합격처리

- 합격자 발표 : 2025. 1. 23.(목) 예정

③ 인성검사

- 대 상 : 필기전형 합격자
 - ※ 제한경쟁 폐기물처리기술사 응시요건 충족자, 이동지원운전원 실기전형 합격자
- 준 비 물 : 신분증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한함
 - ※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필수
 - ※ 촬영된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사용 불가
- 검사일자 및 장소 : 2025. 2. 4.(화) 예정 / 장소 추후 별도 공고
- 검사내용 : 직무수행과 관련한 개인의 인성에 관한 검사
- 결과활용 :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미응시자 면접전형 응시불가)

4 서류전형

- 대 상 : 필기전형 합격자 중 인성 검사에 응시한 자
- 제출일자 및 방법 : 인성 검사 당일 본인 직접 제출
- 제출서류

| 구 분 | | 내 용 |
|-----|---------------|---|
| 공 통 | 주민등록초본 | • 공고일 이후 발행분, 병역사항, 인적사항변동 기재 |
| | 개인정보취급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탁에 관한 동의서 ※ 채용 홈페이지 내 응시원서 제출시 |
| | 기 타 | • 사본의 경우 원본 지참 |
| 대상자 | 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
|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 •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발행 |
| | 경력증명서 | • 관련 분야 경력 증명서(해당기관 발행) ※ 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 납부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 소득 원천수납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통해 경력입증이 가능해야 함 |
| | 사회적 약자 관련 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통일부 등 발행)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다문화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및 국적취득자 기본증명서) |

※ 국가(기술) 자격 취득 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하며, 명칭 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

※ 위 사항 외 기타 자격사항을 인정하는 서류는 별도 제출하여야 함

[합격자 결정]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자격 충족자 전원 합격

- 1) 제출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2) 응시원서의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 3) 응시원서의 가산점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 가산점내역을 제출서류보다 응시원서에 **높게** 기재 : 부정행위로 간주(서류전형 불합격)
 - ☞ 가산점내역을 제출서류보다 응시원서에 **낮게** 기재 : 필기전형 가산점에 소급적용 X, 서류전형 합격

-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025. 2. 12.(수) 예정

5 면접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인성검사 미응시자 제외)
- 준비물 : 신분증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한함
 - ※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필수
 - ※ 촬영된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사용 불가
- 시험일자
 - 승마교관 기승면접 : 2025. 2. 14.(금) 예정
 - 승마교관 외 직렬 면접 : 2025. 2. 17.(월) ~ 2. 19.(수) 예정
- 시험장소 : 추후 별도 공고
- 면접방법 : (일반직) PT면접 → 그룹면접, (공무직) 그룹면접, 기승면접(승마교관)
 - PT 면접 : PT주제 추첨 후 주제에 관한 개인별 발표
 - 그룹면접 : 면접위원과 응시자 간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 기승면접 : [붙임3]의 진행코스에 따른 실제 마필 기승 능력 시연
- ※ 폐기물처리기술사의 경우 직무 및 인성 면접 실시
- 평가항목 및 방법 : 면접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아래 5가지 항목을 각 0점부터 20점까지평가

| 계 | ① 조직적합도 | ② 직무적합도 | ③ 의사소통능력 | ④ 문제해결능력 | ⑤ 직업윤리 |
|------|---------|---------|----------|----------|--------|
| 100점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 ※ 승마교관의 경우 실무능력 검증을 위한 면접 강화
 - ↳ ①, ③, ④, ⑤ 항목 : 타 직렬과 동일한 구조화된 경험행동 면접 및 인성면접 실시
 - ↳ ② 항목 : 실제 마필 기승능력 시연을 통한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검증 실시(붙임3 참조)
-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 면접전형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적용방법은 필기전형과 동일)
- 합격자 결정 : 심사위원별로 평가한 점수 중 최상위 평가점수와 최하위 평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하여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4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면접전형 만점의 60%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 ※ 면접위원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6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예정자 결과 발표 : 2025. 2. 24.(월) 예정
- 최종 합격예정자 결정 방법

- ① 필기전형 점수 50%와 면접전형 점수 50%를 합산한 점수(가산점수 포함)가 높은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폐기물처리기술사의 경우 면접전형 점수 100%)
- ②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취업지원대상자, 2.면접전형 고득점자, 3.필기전형 고득점자(일반직은 NCS기초, 전공시험 순), 4.인성검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및 기준

| 대 상 | | 가 산 자 격 | | 가산비율 | 비 고 | |
|-----|-------------|--|----------------------------------|--------------|-------------------------|----|
| ① | 국가기술 자격증 | 사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 5% | 1인 1종만 (유리한 것) 적용 | |
| | |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른 해당분야 인정 자격증 | 건축사, 기술사 | | 5% |
| | | | | 기능장, 기사 | | 3% |
| ②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 10% 또는 5% | 증명서의 가산비율에 따름 | |
| ③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해당자 | | 3% | | |
| ④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 | 3% | | |
| ⑤ |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해당자 및 그 가족 | | 3% | | |

[가산점 적용 방법]

- 1) 가산비율은 전형단계별 만점을 기준으로 가산하며 필기전형, 면접전형에 가산 함.
- 2) 필기전형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을 60% 이상 득점한 경우에 적용(시험과목이 하나인 경우 과목 총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에 적용)
- 3) 면접전형은 면접전형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경우에만 적용(적용방법은 필기전형과 동일)
- 4) ①, ②, ③, ④, ⑤ 간에는 중복하여 가산함(일반직은 자격가산 포함 중복적용)
※ 자격가산 시 국가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5) ②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종 및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 불가

6

직렬별 담당업무 및 보수 : 붙임4 참조

7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최종 합격예정자 중 임용등록 포기,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합격취소, 채용 결격 사유로 인한 임용취소,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 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예정입니다.
-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2명 이상인 경우 1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발합니다. (단, 면접전형 미응시자 및 면접전형 불합격자는 제외합니다.)
-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동일직렬의 차기 공개채용의 최종 합격예정자를 발표할 경우에는 그 발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8

임용(시보직원)

- 공단 인력운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임용일자는 25년 3월, 25년 7월, 26년 1월 예정이며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임용대기자가 임용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일반직 신입직원의 경우 통합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이 변경되거나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정하는 기간(3개월) 동안 시보근무 후 정규 임용할 예정이며, 시보기간 중 결격사유 발생 및 근무성적 등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정규 임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재, 허위기재, 착오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응시 자격요건 및 가산점에 대한 오기재, 허위기재, 착오기재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니 확인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단 신입직원 채용은 전 과정에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개인 식별정보(출신학교, 생년월일,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입사지원자는 편의사항 제공이 필요한 경우 입사지원 시 [붙임 7] 증빙서류 제출과 함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및 전형단계별 합격자는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후속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서류전형 시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응시자는 진위여부 확인(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탁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시험방해를 하는 경우, 서류접수 제출기한 내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제출서류로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른 경우,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임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 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예정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채용신체검사, 성범죄 경력, 비위면직자 조회 등을 실시하며, 합격예정자 공고 후에도 그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 등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충분히 여유를 두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접속하지 못할 경우 우리 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우리 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 및 비위채용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에 따라 해당 응시자는 채용절차에서 배제되고 합격 후에도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 공단의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 최종합격 되지 않은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본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임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참조
- 같은 법 제1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2항에 따라 서류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아래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서류전형 대상자(필기전형 합격자 등)에 한해 접수하며, 본 채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채용절차 종료 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영구삭제 및 파기할 예정입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취업이 제한됩니다.
- 전형단계별 불합격자의 경우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다음날 23:59:59까지 이의신청을 받으며, 신청 시 단순문의, 전형단계별 내용과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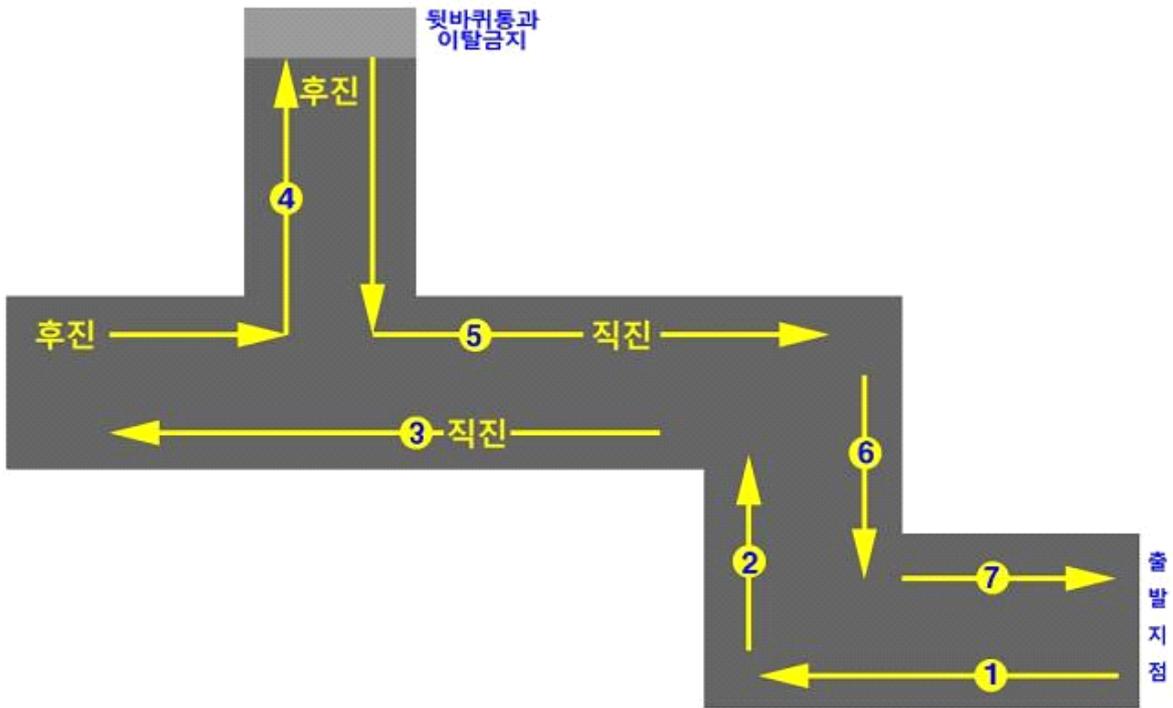
없는 질문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타 법령에 저촉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이 불가합니다. [붙임6] 채용 이의신청서 참조

- 본 채용공고는 공단 사정에 따라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dpfc.or.kr>) 및 채용홈페이지(<https://dpfc.saramin.co.kr>)에 공고하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후 개명한 응시자의 경우 새로운 신분증과 개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지참하여 시험감독관에게 동일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답안지에는 원서접수 시 사용한 이름과 출생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https://dpfc.saramin.co.kr>) 및 경영지원처 인사팀 채용담당자(☎053-605-8898, 603-1126)에게 문의바랍니다.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합격하거나 그로 인해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이동지원운전원 실기전형 코스



※ 시험차량 1대당 외부감독관 3명 밀착확인 후 이탈 즉시 응시자 본인에게 알리고 최종 이탈횟수 및 운행시간에 따라 실기전형 합격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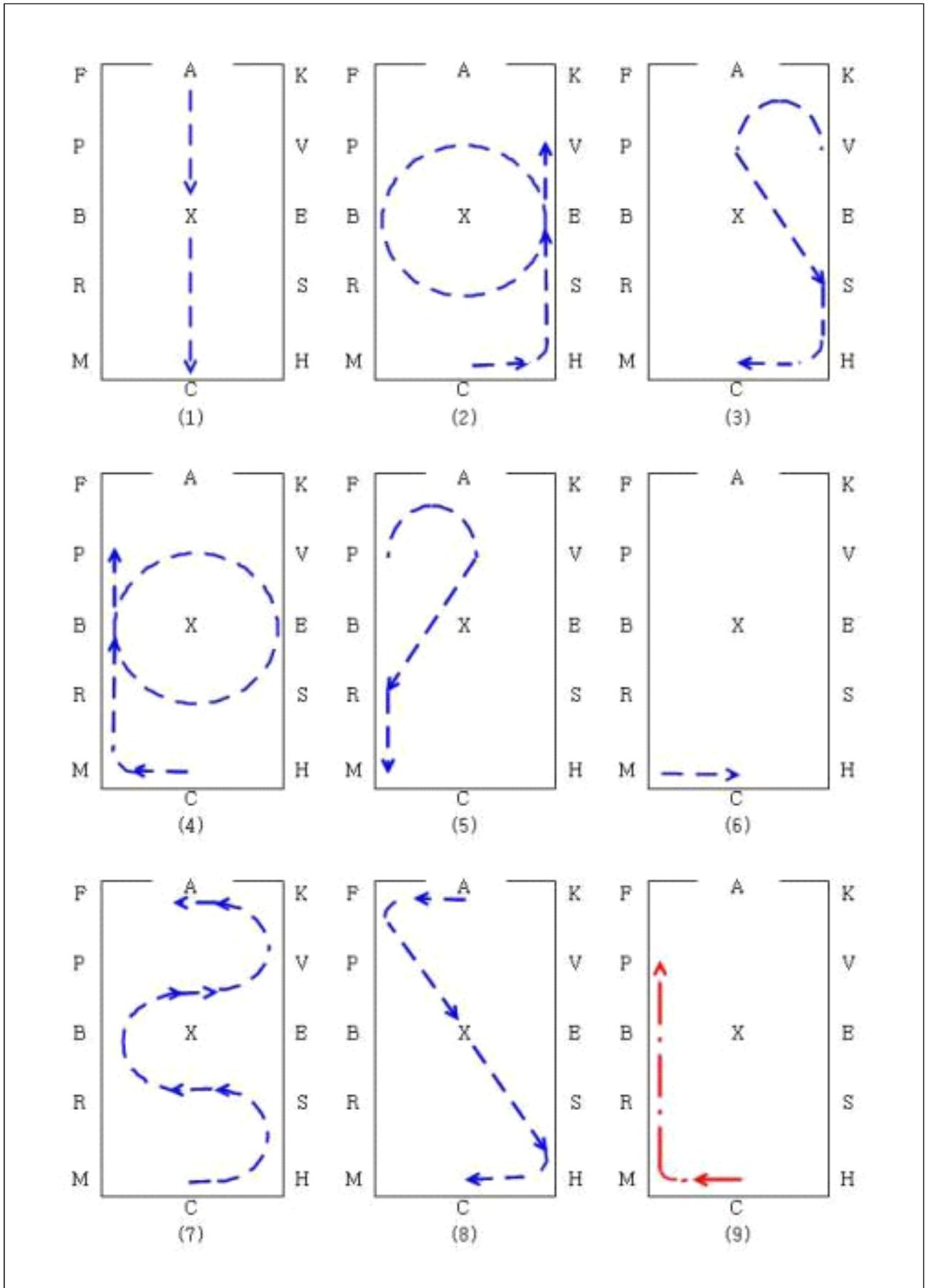
□ **진행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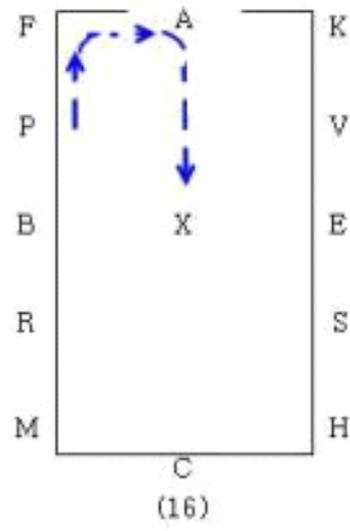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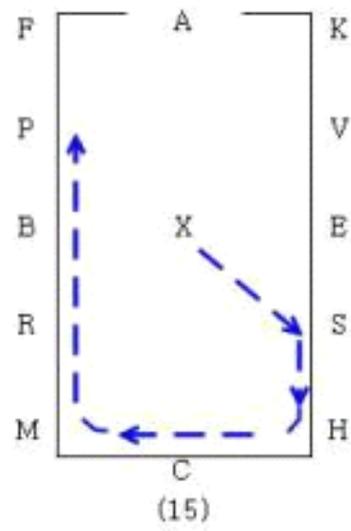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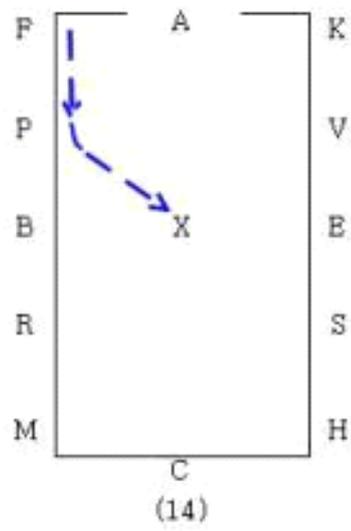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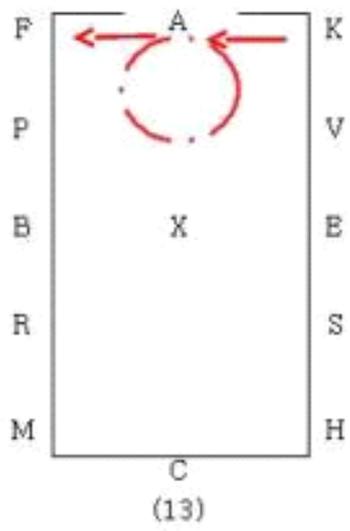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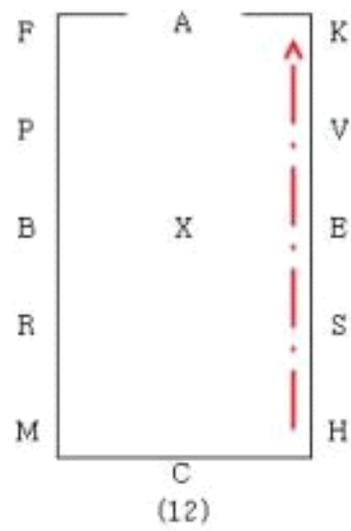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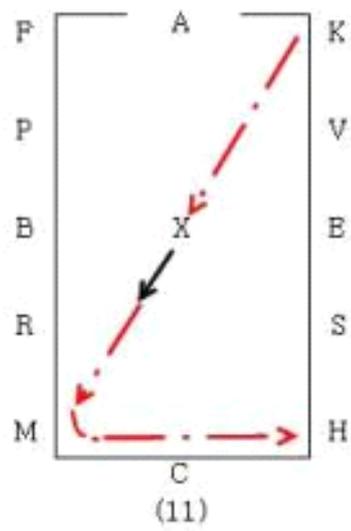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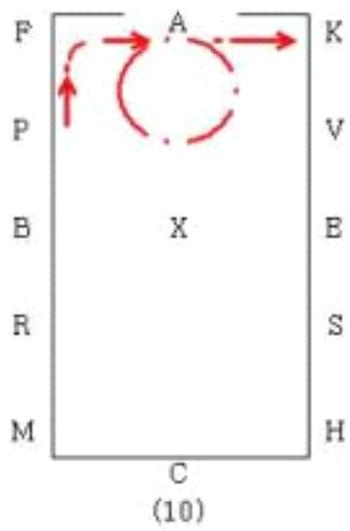
| 순서 | 평가항목 | 순서 | 평가항목 |
|----|--|----|--|
| 1 | A X XC 보통 좌속보 입장 정지/부동/인사 보통 좌속보 진행, 좌측으로 | 9 | C MP 보통 우구보 발진 중간 구보 |
| 2 | HE EBE 좌속보 진행 20m 원 | 10 | PF A 보통 구보 보통 구보 15m 원 |
| 3 | V SHC 10m 반원 좌속보 진행 | 11 | KXM MCH 보통 구보 x에서 단순답보 변환 보통 좌구보 |
| 4 | MB BEB 좌속보 진행 20m 원 | 12 | HK 수축 구보 |
| 5 | P RM 10m 반원 좌속보 진행 | 13 | A 보통 구보 15m 원 |
| 6 | C 정지(4~5초) | 14 | FPX X 보통 속보 정지(4~5초) |
| 7 | CA 좌속보 3만곡 그리기 | 15 | XSH MP 보통 속보 수축 속보 |
| 8 | FXH HC 중간 경속보 좌속보 | 16 | PFA A X 보통 속보 중앙으로 정지, 부동, 경례 |

[기타사항]

- 1) 마장 규격 : 20m × 60m
- 2) 시연시간 : 420초 이내

□ 코스도





< 마장규격 >
20M × 60M

< 제한시간 > 420초

< 표시예 >

- 평보 구간
- 속보 구간
- 구보 구간

직렬별 담당업무 및 보수

| 직 렬 | 담 당 업 무 | 보수수준 | |
|-------------|-------------------------|--|------------|
| 일 반 직 | 사무_일반 | 경영기획, 경영평가, 총무, 인사, 사무행정, 예산, 회계·감사 업무, 사무관리 전반 등 | 월 230만원 정도 |
| | 기술_환경 (폐기물관리 기술사) | 폐기물관리 및 환경시설운영 등 | 월 335만원 정도 |
| | 기술_토목 | 도로시설물 점검, 진단, 성능 상태 분석 및 보수·보강, 유지관리, 토목건설사업관리, 도로포장 등 | 월 230만원 정도 |
| | 기술_건축 | 건축설계, 건축구조설계, 건축감리, 설계용역관리, 시설물안전점검, 건설행정업무, 건설폐기물 관리 등 | 월 230만원 정도 |
| | 기술_기계(일반) | 기계설비(산업용 설비, 환경 관련 기계 설비, 냉동공조설비, 운반 하역기계 등) 운영 관리, 기타 사업장 내 시설관리 전반 등 | 월 230만원 정도 |
| | 기술_기계(공조) | 기계설비(공조설비, 냉동설비 등) 운영 관리, 기타 사업장 내 시설관리 전반 등 | 월 230만원 정도 |
| | 기술_기계(에너지) | 기계설비(보일러설비 등) 운영 관리, 기타 사업장 내 시설관리 전반 등 | 월 230만원 정도 |
| | 기술_전기 | 전기기기 유지보수, 내선공사, 외선공사, 변전설비 공사 관리, 기타 사업장 내 시설관리 전반 등 | 월 230만원 정도 |
| | 기술_임업 | 조경기본설계, 식재설계, 식재공사 등 공사 관리, 조경시설공사, 초화류·수목 관리 등 조경관리 전반 | 월 230만원 정도 |

| 직 렬 | 담 당 업 무 | 보수수준 | |
|-------------|--|--|------------|
| 공 무 직 | 환경시설 관리원 |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 유지관리 및 준설물 처리 관리, 폐기물 운반차량 반입안내, 지도·점검, 계근시스템 관리, 매립시설 반입차량 성상단속, 차량유도, 체육공원 시설관리 등 | 월 250만원 정도 |
| | 청정대기 관리원 | 분진흡입차 차량운전 및 차량관리, 분진흡입차 부산물 처리 등 | 월 250만원 정도 |
| | 안내원 | 이용객 안내, 관리 및 접수 등을 담당하는 자 | 월 220만원 정도 |
| | 도로 관리원 | 도로정비 및 순찰, 도로청소 등을 담당하는 자 | 월 220만원 정도 |
| | 주차 관리원 | 공영주차장 차량관리, 주차관제시스템 등 시설관리 및 운영, 요금징수 및 관리, 환경정비 등을 담당하는 자 | 월 220만원 정도 |
| | 안전 관리원 | 사계절 물놀이장 이용객 지도 및 안전관리, 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 | 월 220만원 정도 |
| | 승강장 관리원 |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 등을 담당하는 자 | 월 220만원 정도 |
| | 이동지원 상담원 | 특별교통수단 이용접수 및 배차, 고객 상담 등을 담당하는 자 | 월 220만원 정도 |
| | 이동지원 운전원 |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 고객 승·하차 보조 및 요금징수 등을 담당하는 자 | 월 250만원 정도 |
| | 승마교관 | 마필훈련 및 관리, 승마강습, 고객안전관리, 회원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 | 월 220만원 정도 |
| 수목 관리원 | 수목(초화류, 잔디 등을 포함한다)의 관리 및 환경정비 등을 담당하는 자 | 월 220만원 정도 | |

※ 보수는 기본급(급식비 포함) 기준이며 각종 수당 등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 주 소 | |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 우 기재) | | |
| 반환청구서류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 | |
|---------------|--------------------|-------|------|
| 입사지원번호 | | 성 명 | |
| 생일 | | 이메일 | |
| 연락처(휴대폰) | | 비상연락처 | |
| 이의신청 내용 |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하게 기술)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 (서명) |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귀하 | | | |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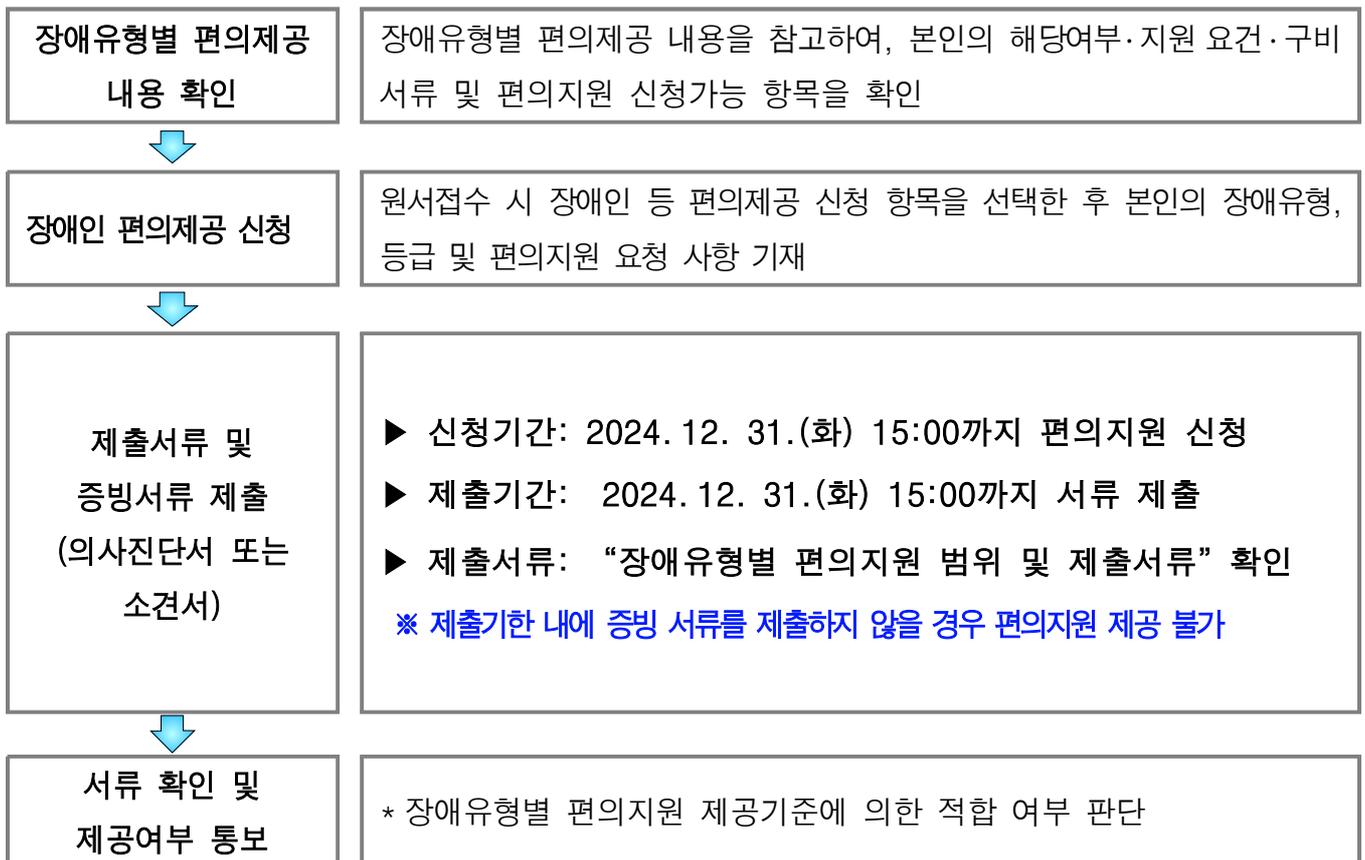
- 이의신청 내용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 바라며,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 작성바랍니다.(문의사항에 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 회신은 이메일을 통해 시행합니다.

장애인 입사지원자 편의제공 사항

□ 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24년도 하반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 편의지원 신청절차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범위 및 제출서류

| 장애유형 및 정도 | | 필기시험 | | 비고 | |
|-----------|------------------------------------|--|--|---------------|-----------------------------|
| | | 편의지원 내용 | 증빙서류 (각1부) | | |
| 지체 장애 | 상지 | 공통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 | |
| |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 복지카드 | 기존 1~3급 |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복지카드 | 기존 4~6급 |
| | 하지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심하지 않은 사람 |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복지카드 | 기존 1~6급 |
| 뇌병변 장애 | 공통 |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 | |
|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 복지카드 | 기존 1~3급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 | 의사진단서 | 기존 4~6급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복지카드 | |
| 시각 장애 | 공통 |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 |
|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복지카드 의사진단서 | 기존 1~2급 |
| | |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복지카드 | 기존 3급 1,2호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사람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복지카드 | 기존 4급 2호 |
| | | · 좋은 눈의 시력이 0.20이하인 사람 | | 복지카드 | 기존 4,5급 1호 |
| |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복지카드 의사진단서 |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 |
| | | ·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 복지카드 | 기존 5급 2호, 6급 |
| 청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심하지 않은 사람 | |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복지카드 | 기존 2~6급 |
| 기타 | 과민성 대장 · 방광증후군 | |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의사진단서 | |

* 확대문제지: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확대답안지: A3 규격의 표기형

* 축소문제지: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대상은 시험시간 연장, 시험시간중 화장실 사용 등을 신청한 자며,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 장애유형 및 정도 | | 예 시 ※ ①~③ 반드시 기재 |
|-----------|----------------|--|
| 시 각 장 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시력/시야: 좋은 눈 0.07,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시력: 나쁜 눈 0.02이하, 좋은 눈 교정시력 0.3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
| 뇌병변 장 애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증상: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
| 기 타 | | ① 장애유형 및 정도: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 - 증상: 눈의 운동장애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장애인 등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은 원서 접수시 ① 본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 화장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